

위험표지(제21조 관련)

위험표지	위험표지 설치 요령
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 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.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: OO시청·군청·구청, T: (012) 345 - 6789 OO 시장·군수·구청장	1. 규격 가. 표지판: 1.2m(가로) × 1m(세로) 나. 기둥: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2. 재질: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. 문구: 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환경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(예시) 건축물(공동주택)의 경우 : “본 건축물(공동주택) 출입을 금지하며, 건축물(공동주택)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” 4. 색상 가. 표지판 바탕: 어두운 노랑 나. 글씨: 검정으로 하되, 붕괴위험 지역은 빨강으로 함 다. 기둥: 노랑색 라.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